

건축설계작품 진실성위원회 규정 (2024.0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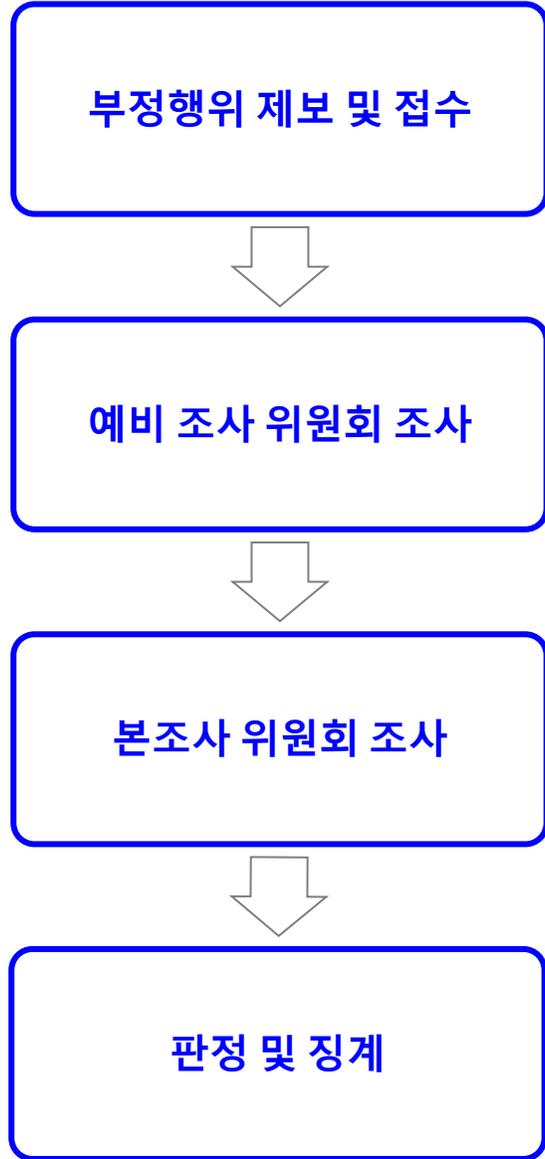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건축학부는 '건축설계작품 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제정하여 건축설계 윤리와 건축설계 작품의 독창성, 창의성, 진실성을 확립하고 건축설계작품 표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표절행위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건축설계 작품 진실성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한다.

건축 설계 작품 진실성 위원회는 총 9 명의 학과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기/비정기적으로 건축설계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용어의 정의 (홍익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규정을 근거로 건축설계작품의 특성을 적용하여 재정의)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참조를 넘어서 타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작품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작품의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건축설계 진실성 위원회 운영 절차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가능
 -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함
2. 예비조사위원회
 - 신고 접수일부터 15 일 이내 구성 및 조사 착수
 - 조사시작일부터 30 일 이내 예비조사 완료하여 위원회 승인 받음
 -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의뢰 가능
 - 위원회 승인 후 10 일 이내 문서통보(제보자, 당사자)
 - 교내 학생 간의 표절논의의 경우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학생, 피표절 학생, 해당학기 담당 지도교수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3. 본조사위원회
 - 예비조사 승인 후 15 일 이내 조사착수
 - 조사위원회는 학년별 설계주임, 학과장, 학장의 총 7 인으로 구성
 - 외부에서 제기된 표절의 경우 외부 인사를 1 인이상 포함할 수 있음
 -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 일 이내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조사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에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함
4. 판정
 - 피조사자에 대한 건축설계 부정행위 유무 확정
 -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
 - 최종 보고서는 판정 후 10 일 이내에 학과장 및 학장에게 통보
 -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총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건축설계 진실성 위원회 운영 절차

관련 징계 규정

홍익대학교 학칙 12 장 포상과 징계

제66조(징계)

- ① 학생이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학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한다.

학생 포상과 징계에 관한 규정

제5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근신은 2주 이내, 유기정학은 4주 이내, 무기정학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

제 6 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 자. 시험 및 각종 제출물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행하거나 이를 계획한 자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 가. 유기정학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으로 처한다.
 - 가. 무기정학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제7조(징계 절차) 제6조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경위서 : 제안자 또는 주무부서장 작성 <개정 2015.10.1., 2022.1.1.>
2. 본인 진술서
3. 제안자 의견서 <개정 2015.10.1., 2022.1.1.>

제8조(학생상벌위원회)

- ① 학생 및 학생단체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상벌위원회를 둔다. 그 구성은 <별표2>와 같다.
- ② 세종캠퍼스 위원회는 포상 또는 징계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서울캠퍼스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주무부서에서 발의한 포상 및 징계의 요청서를 접수한 후 회의를 소집한다.
- ④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필요한 경우 학생상벌위원회에 해당 학생을 출석케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⑥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안자 또는 심의 대상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 ⑦ 위원회의 의결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 [전면개정 2022.1.1.]